::: 법규전문 ::: Page 1 of 6

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지침

[일부개정 2023.1.20 지침 제818호 <시행일:2023.1.30>]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의 임원(집행간부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직원에 대해 <u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1항</u>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의 방법 ·절차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11.4, 2019.6.28, 2020.2.28>

제2조(매매거래 등에 관한 원칙) 임원 및 직원(이하 "임직원"이라 한다)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래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건전하고 공정한 투자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2.28>

제3조(매매거래방법) 임직원은 <u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법시행령"이라 한다) 제64조제2항제1호</u>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라야한다. <개정 2019.6.28>

- 1. 자기의 명의로 매매거래할 것
- 2.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거래할 것. 다만, <u>법시행</u> <u>령 제64조제3항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거래할 수 있다.
- 3. 매매거래명세를 분기별로 제10조에 따라 신고할 것
- 4. 그 밖에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

[전문개정 2014.11.4]

- 제4조(매매거래제한) 임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8.9.27, 2019.6.28>
 - 1. <u>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」 제138조제1호</u>의 주식워런트증권, <u>법시행령 제64조제2항제5호 및</u> 제6호의 매매거래
 - 2. 매월(임원은 매분기로 한다) 첫 날부터 말일까지 체결된 주문 횟수(주문이 분할체결된 경우에는 1회로 본다)가 20회를 초과하는 매매거래
 - 3. 해당 연도 투자불입금액이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매매거래
 - 4.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매매거래 등

[전문개정 2014.11.4]

- 제5조(시장관련부서의 매매거래제한) ① 상근임원 및 별표에서 정한 시장관련부서·팀(이하 "시장관련부서"라 한다)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별표에서 정한 해당 시장관련부서의 매매거래금지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제1항 이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려는 상근임원 및 시장관련부서 직원(시장감시본부의 경우에 한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은 감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사전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서를 접수완료하였음을 통지받은 후에 신고수량과 신고금액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매거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내용 접수를 통지한 날부터 5매매일까

::: 법규전문 ::: Page 2 of 6

- 지 효력이 있다. <개정 2019.6.28, 2020.2.28>
- ③ 감사담당부서장은 시장관련부서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2020.2.28>

[본조신설 2014.11.4]

제5조의2(시장관련부서의 매매거래제한의 예외)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의 방법으로 매도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9.27]

- 제6조(매매거래제한 등의 적용 예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한국거래소의 임직원 또는 시장관련부서 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, 거래의 종결, 권리행사 등을 위한 경우
 - 2. 상속, 증여(유증을 포함한다), 담보권의 행사,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
 - 3.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한 것을 처분하는 경우
 - 4.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
 - 5. 그 밖에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
 - ② 투자일임계약(랩어카운트를 말한다)에 대해서는 제4조제2호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4.11.4]

- 제7조(회사 보유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이용한 매매거래 등 금지 <개정 <u>2022.9.8</u>>) 임직원은 회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, 노트북 또는 모바일 기기 등의 단말기와 회사가 소유, 임차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등을 위한 주문 등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22.9.8>
- 제8조(HTS 등의 접근 제한) ①직원은 부서장의 승인없이 투자중개업자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HTS 등을 설치하지 못한다.
 - ② 각 부서장은 업무상 필요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감사담당부서장 및 전산관리담당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, 부서이동, 업무의 변동 등으로 동 승인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9.6.28, 2020.2.28>
 - ③ 전산관리담당 부서장은 승인내역 및 변동내역을 확인하여 매분기의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6.28, 2020.2.28>
- 제9조(계좌개설 신고)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등을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인 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고 개설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매매거래가 있은 날이 속한 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. 다만,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시까지 계좌개설신고를 하여야한다. <개정 2011.7.11, 2012.10.17, 2014.11.4, 2020.2.28>
 - ② 제1항의 계좌개설 신고시 이미 신고한 계좌를 폐쇄하거나 다른 신규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제

::: 법규전문 ::: Page 3 of 6

3조제2호 단서에 따른 행위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4>

제10조(매매명세 등의 신고) ① 임직원은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라 행한 금융투자상품 잔고현황 및 매매거래 등의 명세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0.17, 2014.11.4>

- ②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잔고현황신고서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명세서(이하 "신고서"라 한다)를 임직원이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, 그리고 매분기 종료후 익월 15일까지 감사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0.17, 2014.11.4, 2020.2.28>
- ③ 제2항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현황신고서의 작성기준일은 새로이 임직원이 된 때에는 그 선임·채용일을 기준으로 하며,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명세서는 직전 작성기준일 이후의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12.10.17, 2014.11.4>
- ④ 제2항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잔고 및 거래증명서, 잔고 및 거래 내역 통보서 또는 통장사본, 입출금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전 신고내용 과 변동이 없거나 무상증자, 주식배당 등 보유주식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26>
- 제11조(신고사항의 심사) ① 감사담당부서장은 임직원이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2.28>
 - ② 감사담당부서장은 임직원이 신고내용의 일부를 누락, 기재내용 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6.28, 2020.2.28>
 - ③ 감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임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계 좌개설 및 거래 내역 등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반 드시 응해야 한다. <개정 2019.6.28, 2020.2.28>
- 제12조(신고의무 적용예외)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는 신고기간 중 1개월 이상 연수· 파견·휴가·휴직 중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연수· 파견·휴가·휴직의 종료일 이후 최초 신고일에 신고예외기간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6.28>

[전문개정 2012.10.17]

- 제13조(변동사항 통보) 기획담당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장은 임직원이 선임·채용, 전보, 퇴임·퇴직·연수·출장 등의 사유로 제9조 및 제10조의 신고의무를 적용받게 되거나,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0.17, 2020.2.28>
- 제14조(이행실태 점검 및 보고) ① 감사담당부서장은 임직원의 이 지침에 대한 이행실태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6.28, 2020.2.28>
 - ② 감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인적·물적 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2.28>
 - ③ 감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2.28>

::: 법규전문 ::: Page 4 of 6

제15조(관련 법령의 적용) 제1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, 서약서등에 따른 임직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<u>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</u>, 「통신비밀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0.2.28>

제16조(제재 등 조치요구)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<u>「상벌규정」</u>에 따른 제재 또는 법령 등이 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0.17, 2014.11.4, 2019.6.28, 2020.2.28>

-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
- 2.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(부작위를 포함한다)한 경우
- 3.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요구한 자료 등의 제출, 출석요구 등을 거부 또는 허위 진술하거나 심사를 방해하는 경우
- 4. 근무시간 중에 과도하게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등을 행한 경우
- 5.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등을 행하거나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불건전하게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등을 행한 경우
- ②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수준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신고서 등의 관리) 감사담당부서장은 임직원이 제출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식 및 그 첨부서류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2.28>

제18조 삭제<2014.11.4>

제19조(보칙 <개정 <u>2019.6.28</u>>) 상임감사위원은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 **<제131호**, 2009.1.30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기준 시행일 현재 임직원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실천지침은 이 를 폐지한다.

부칙 <제188호, 2010.3.2>

이 기준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3호, 2010.5.3>

::: 법규전문 :::

Page 5 of 6

이 기준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40호, 2011.7.11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6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2010년 하반기에 실시한 이행실 태 점검 이후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일임계약(랩어카운트)을 체결하거나 계좌를 개설한 경우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부칙 <제303호, 2012.10.17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투자금융상품의 매매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)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을 위한 매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부칙 <제422호, 2014.11.4>

이 지침은 201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**<제611호**, 2018.9.27>

이 기준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1호, 2019.6.28>

이 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9호, 2020.2.28>

이 지침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::: 법규전문 ::: Page 6 of 6

부칙 <제764호, 2022.1.20>

이 지침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2호, 2022.9.8>

이 지침은 202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18호, 2023.1.20>

- 이 지침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❖ [별표] 시장관련부서 및 매매거래금지 금융투자상품 등 **<개정** 2018.9.27, 2019.6.28, 2020.2.28, 2022.1.20, 2023.1.20>
- ◆ [별지 제1호 서식]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신고서 **<개정** 2010.2.26, 2012.10.17, 2014.11.4, 2019.6.28, 2020.2.28>
- ♦ [별지 제2호 서식] 계좌개설신고서 <개정 2010.2.26, 2012.10.17, 2014.11.4>
- ♦ [별지 제3호 서식] 금융투자상품 잔고현황신고서 <개정 2010.2.26, 2012.10.17, 2014.11.4>
- ♦ [별지 제4호 서식]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명세서 <개정 2010.5.3, 2012.10.17, 2014.11.4>
- ♦ [별지 제5호 서식] 금융투자상품 투자금지 서약서<신설 2012.10.17> <개정 2020.2.28>